

환정보험제도의 입법방향

현행 환경보험관련 제도

-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사실상 기업
의 환경오염리스크 관리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
-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공급의지가 적은 것은 환경오염리스크와 관련하여
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평가의 곤란성이 주된 이유
- 일반적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상품 : 국문과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
의 특약담보, Package Policy에서 특약담보, 별도의 환경오염배상책
임보험

현행 환경보험관련 제도상의 한계

-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각종 경제적 유인수단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음
- 『환경책임법』과 같은 법적 장치의 결여
 - 가해자의 오염예방 동기 부족
 - 환경손해 발생시 책임이행 방법과 책임이행능력의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미비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어려움
- 가해자의 배상능력의 한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
-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집행력 결여

환경배상책임보험의 도입 필요성

- 첫째, 오염배출규제와 피해구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기능
 - 종래의 환경관리수단은 오염배출업자의 활동 수준을 최적수준으로 규제하여 오염배출억제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 및 보상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
 - 더 나아가 환경책임법제가 도입되더라도 영세기업에 배상책임을 강제하는 경우에 도산 등의 경제적 부담을 주어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 및 오염배출 억제에 효과도 감소하는 문제점 발생
 -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에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오염배출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배출억제를 위한 투자와 생활 활동을 죄적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보험조건을 설정

도입의 필요성

- 둘째, 기업의 환경오염저감의 유인수단으로서 기능
 - 환경오염위험을 저감하면 할수록 보험료부담도 낮아지는 것이므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오염위험삭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 평가
 - 다만, 경제적 유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오염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법제도가 전제조건으로서 필요
- 셋째, 위험평가를 통한 환경관리수단으로서 기능
 - 보험회사가 행하는 위험평가는 보험료의 설정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
 - 더 나아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후에도 위험변동에 따라 보험료 개정과 계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려는 동기가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환경오염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

도입의 필요성

- 넷째,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을 구현하는 기능
 - 오염배출업자의 무자력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 및
정화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피해배
상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공공적으로는 오염원인자책임이 구현

보험 대상 및 보험인수자 등

1) 보험가입강제의 대상 및 범위

- 오염원의 배출 위험이 있는 사업자를 원칙으로 하되, 보험담보력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단계적으로 해당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.

2) 보험인수자의 선정

- 보험의 인수자의 선정문제는 두 가지 방안이 고려
- 민영손해보험회사가 인수 : ex)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
- 원보험 풀방식 : 전 손해보험회사가 참여 ex)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

3) 보험기간

- 미국과 같이 1년 이상 10년 등 장기적으로 설정하여 위험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

보험료율과 위험평가

환경보험 보험료율의 증가 우려

- 위험예측의 어려움, 환경오염사고의 증가, 피해액수 증가 등이 원인
- 초기에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차 증가시켜 가는 방안
- 환경기초시설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보험료율을 감경 해주는 방안

보험료율과 위험평가

주요 원칙과 대안

- 보험회사의 위험평가
 - 보험회사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원리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고, 보험료개정과 계약해소의 필요로 인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능
- 주요국가의 경우 리스크 측정이 가능한 대상과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한정
- 환경오염사고 및 소송관련정보, 리스크평가기법 개발 등의 노력
-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위해 프랑스의 Assurpol과 같이 산업 전체의 손해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검토

담보범위

1)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위험

2) 점진적 오염위험도 담보하여야 함

- 환경오염의 담보범위는 환경보험의 근본 취지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한 오염위험 뿐만 아니라 점진적 오염 위험도 담보하여야 함
- 환경오염손해의 성질상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, 이들 비용을 적극적으로 보상하지 않고서는 손해의 확대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움

담보범위

2) 제3자 피해배상

- + 수질, 토양, 생태계 파괴 등에 관련된 오염복구 책임
- 독일 환경피해법에 의한 보험(USVPolicy)은 수질, 토양, 생태계 파괴 등에 관련된 오염복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, 기존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독립된 보험으로 운영하도록 설계
- 환경책임법 시행초기 환경오염에 따른 제3자의 피해 배상만을 환경책임으로 한정하는 경우 수질·토양,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오염복구 책임은 동책임법에 기초한 환경보험제도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
입법내용: 담보범위

3) 법적 소송비용과 방어비용

- 피해자의 청구에 대한 법적 소송비용과 방어비용도 보충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므로 담보범위에 포함해야 함
- 소송비용이 과도한 경우를 대비해 “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”의 비용에 대해서만 담보
- 일정범위에 대해서 특약의 형식으로 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

면책범위와 책임한도

- 면책범위
 - 합리적 면책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명료화가 필요
- 책임한도
 - 보험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보험의 활성화 도모하는 방안 모색
 - 사고당 담보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설정하고, 보험기간 동안 모든 사고발생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최고상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안

기여한도 책임 (연대책임시)

- 우리나라 환경관련법의 오염원인자 연대책임으로 위험 예측과 보험료를 산정에 있어 불확실성 증가
- 책임 당사자가 오염기여도가 적으면서도 연대책임원칙에 의해 지급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주어지게 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오염 기여도나 위험감소노력과 상관없이, 제3자에 의해 야기된 오염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음
-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자의 부담감경과 환경보험의 정착을 위해 책임당사자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경우 기여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

자기부담금 도입

역선택의 방지

-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험사의 능력제고
-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

도덕적 해이의 방지

- 피보험자와 위험을 공유하여 파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을 회피하도록 동기 부여
 - ex) 일정 비율 손실분담, 지불보험금 상한
- 특정한 오염방지조치 도입을 보험인수의 조건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처

보험 POOL 제도의 도입

- 환경오염리스크를 보험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잠재 노출리스크가 매우 큰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인수나 풀(pool)제도를 검토
- 초기에는 보험풀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